

[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]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계약,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변경 내용을 공시합니다.

1. 대상 투자신탁 :

집합투자기구 명칭(종류명 명칭)	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
iM 에셋 아시아 퀄리티 증권 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(H)	29693

2. 주요 변경 내용

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(종류 S 등 수익증권 관련 설명) 개정사항 반영
- 종류 S 수익증권 판매회사 보수율 변경(0.20%→0.19%, 2024년 09월 12일부터 적용)
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 대상 서류 :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

4. 변경 시행일 : 2024년 09월 12일

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및 해당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변경된 집합투자계약,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는 당사 홈페이지(www.im-fund.com) 및 해당 판매회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

[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 전	정정 후
제3조(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및 명 칭 등)	<p>③ (생략)</p> <p>8. 종류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</u></p> <p>9. 종류 S-p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u></p> <p>12. 종류 S-i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,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</u>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종류 S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 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u></p> <p>9. 종류 S-p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12. 종류 S-i 수익증권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하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
제37조(보수)	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	8. 종류S 수익증권 가. (생략)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<u>2.0</u> 다. ~라. (생략)	8. 종류S 수익증권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<u>1.9</u> 다. ~라. (현행과 같음)
부칙	신설	<u>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4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</u>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 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 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며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 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 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 지 않습니다.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 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며, 특히 예금자보호 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 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 호되지 않습니다.
요약정보			
표지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 항 반영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 며, (현행과 같음)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 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 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 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 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 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.
집합투자기구 의 종류	금융투자회사 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 칙(종류 S 등 수익증권 관 련 설명) 개정 사항 반영	판매경로 - 온라인 슈퍼(S) : 집합투 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 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 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 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 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 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 다.	판매경로 - 온라인 슈퍼(S) : 집합투 자사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 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 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 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 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 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
<p>2. 집합투자기 구의 연혁</p>	<p>연혁 추가</p>	<p>신설</p>	<p>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(종류S등 수익증권 관 련 설명) 개정사항 반영 종류S 수익증권 판매회사 보수를 변 경(0.20%→0.19%, 2024년 09월 12일 부터 적용)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예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</p>
<p>6. 집합투자기 구의 구조</p>	<p>금융투자회사 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 칙(종류 S 등 수익증권 관 련 설명) 개정 사항 반영</p>	<p>나. 종류형 구조 판매경로-온라인 슈퍼(S) : <u>집합투자 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 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 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가 저렴한 집합투자자기구입니다.</u>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p> <p>•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 : <u>집합투 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 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 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u>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 (S-p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 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</u></p>	<p>나. 종류형 구조 판매경로-온라인 슈퍼(S) : <u>집합투자 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 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 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 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 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 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 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 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 보 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자기구입 니다.</u>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p> <p>•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 : <u>집합투 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 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 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 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 래스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 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u>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 (S-p)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 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</u></p>

		<p><u>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u>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형-고액 (S-i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,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</u></p>	<p><u>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형-고액 (S-i)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하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	<p>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</p>	<p>(생략)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<u>예금보험공사 등의</u>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</p>	<p>(현행과 같음)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</u>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.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(종류 S 등 수익증권 관련 설명) 개정</p>	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</u></p>	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</u></p>

	<p>사항 반영</p>	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 (S-p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</u>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형-고액 (S-i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로,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</u></p>	<p><u>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u>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형 (S-p)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,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형-고액 (S-i)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하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	<p>종류 S 수익증권 판매회사 보수율 변</p>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[종류 S수익증권]</p>	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[종류 S수익증권]</p>

	경	<p>- 판매회사 보수율 : <u>0.20%</u></p> <p>- 총 보수율 : <u>0.6500%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p>	<p>- 판매회사 보수율 : <u>0.19%</u></p> <p>- 총 보수율 : <u>0.6400%</u></p> <p>※ 1,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(누적)</p> <p>: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형(S) 보수율 변경사항 반영</p>
--	---	---	---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표지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	이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, (현행과 같음)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</u>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(종류 S 등 수익증권 관련 설명) 개정사항 반영	<p>판매경로 - 온라인 슈퍼(S) 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</p> <p>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p>	<p>판매경로 - 온라인 슈퍼(S) : <u>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종류 S-P 수익증권 포함)를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p>